

檢 討 報 告

감도서 : 송부위원회 전문위원 이 영 진

1. 提 出 者: 瑞 山 市 長

2. 提 出 日 字 : 1997. 6. 17

3. 提 案 理 由

- 대단지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일부 동·리지역 인구증가로 동·리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.

4. 主 要 骨 子

- 동지역 수석동리의 관할구역 수석5동을 분동하여 1개의 동을 증설하고 【별표 2】
- 읍·면지역 고북면리의 신장2리 다음에 신장3리, 신장4리를 신설하고, 신장3리의 관할구역을 정거미, 아래황골로, 신장4리의 관할구역을 진디, 고정으로 하고자 함.

【별표 2】

5. 檢 討 意 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동·리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·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
-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과 지역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동·리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, 시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음.